

## 대우교수임용 규정

**제 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우교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(자격)** 대우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(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1. 대학(교)에서의 전임교원 경력이나 본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교에서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원 중 본교에 공헌이 크고 본교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대학교원 자격이 인정되는 자나 타 대학에서 정년 퇴직한 교원 중에서 학술 분야의 업적이 크고 본교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 3조(임용절차)** ① 소속학부(학과)에서 대우교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매학기 초에 임용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.

**제 4조(강의 담당 시간)** 대우교수는 **주당 9시간 이내**의 강의를 담당한다.(2019.8.1. 개정)

**제 5조(구비서류)** 대우교수를 소속 학부(학과)장이 추천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학력증명서
3. 경력증명서
4. 주민등록등본
5. 당회장 추천서(본 교단을 원칙으로 한다.)

**제 6조(처우)** 대우교수의 대우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참작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 7조(해임)** 대우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임시킬 수 있다.

**제 8조(운영세칙)** 대우교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